

#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## 1. 행정규칙명

-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고시 제2022-17호, '22. 5. 6.)

## 2. 개정사유

-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(이하 “FTA관세법 시행규칙”)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
- 「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」 (이하 “캄보디아와의 협정”)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 (§10, §17, §17의2)
  -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 물품\*(이하 “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”)으로 지정·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·절차 마련
  - \*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(제6조제1항제3호 신설, '22. 7. 5.)
  -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, 세관장의 심사 기준, 신고수리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

-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,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고시에 반영(\$28, \$34, \$35, 별표3)

**4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 없음”**

**5.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**

**6. 시행 일자 : 2022. 00. 00.**

## **7. 의견제출 방법**

- 제출기한: 2022. 11. 14. 까지(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)
- 담당자: 김진선 사무관(042-481-3215)  
          심성훈 주무관(042-481-3206)
- 제출방법: 이메일(sim307307@korea.kr)